

1. 개정이유

토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,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·변경을 위한 지표 중 더 이상 작성·관리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녹지자연도를 항목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공원조성계획 지표 중 녹지자연도 삭제(안 2-2-2.(1)·(2), 2-4-3., 2-4-4.)

나.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 완화(안 2-2-2.(3), 2-4-1.(4)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·변경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·변경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 제2절 2-2-2. 중 “임상도, 녹지자연도,”를 “임상도,”로 하고, 같은 절 2-2-2.(1) 중 “지역,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인 지역”을 “지역”으로 하며, 같은 절 2-2-2.(2) 중 “권역,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”을 “권역”으로 하고, 같은 절 2-2-2.(3) 중 “개발제한구역”을 “개발제한구역, 「하천법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,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”으로, “구역은”을 “구역과”로, “도시자연공원구역과”를 “도시자연공원구역을”로 한다.

제2장 제4절 2-4-1.(4) 중 “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”을 “2-2-2. (3)에 따른 자연보전 목적을 갖는 지역 또는 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”으로 하고, 같은 절 2-4-3. 중 “3영급~1영급, 녹지자연도 6등급~0등급을”을 “3영급~1영급을”로 하며, 같은 절 2-4-4. 중 “임상도, 녹지자연도”를 “임상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(해제) 기준</p> <p>제2절 지정 기준</p> <p>2-2-2.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할 때에는 국토환경성평가 결과, 생태·자연도, <u>임상도</u>, <u>녹지자연도</u>,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.</p> <p>(1)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1등급 지역, 생태·자연도 1등급 권역, <u>임상도 4영급 이상인 지역</u>, <u>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인 지역</u>,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적성등급의 지역은 우선적으로 구역 지정의 대상이 된다.</p> <p>(2)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2등급 지역, 생태·자연도 2등급 권역, <u>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</u>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나 현장조사에 의하여 양호한 식생이 분포하는 것으로</p>	<p>제2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(해제) 기준</p> <p>제2절 지정 기준</p> <p>2-2-2. ----- ----- -----<u>임상도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(1) ----- ----- ----- <u>지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(2) ----- ----- <u>권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여가·휴식공간으로서의 이
용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
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·군
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
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부를
변경(해제)할 수 있다.

- (1) ~ (3) (생략)
- (4)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중복 지정된 경우

2-4-3.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
(해제)을 위하여 환경성 검토
를 통해 국토환경성평가 결
과 3등급~5등급, 생태·자연
도 3등급, 임상도 3등급~1영
급, 녹지자연도 6등급~0등급
을 이용등급으로 하고, 이용
등급을 대상으로 변경(해제)
하도록 한다. 다만, 입지여건
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위
등급지를 변경(해제)할 수 있
다.

2-4-4. 이용등급은 국토환경성평
가 결과, 생태·자연도, 임상
도, 녹지자연도 등을 활용하

-----.

- (1) ~ (3) (현행과 같음)
- (4) 2-2-2. (3)에 따른 자연보전
목적 을 갖는 지역 또는 구
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

2-4-3. -----

----- 3등급~1영급
을-----

-----.

2-4-4. -----
----- 임상
도-----

여 상위등급을 우선 적용하
여 등급을 부여하도록 한다.

-----.